

[사 건 명] 핵심 2016-27

학교폭력에 가해에 따른 처분 취소청구

청구인 : ○○○

피청구인 : ◇◇초등학교장

[주 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6. 5. 19., 2016. 6. 20. 청구인에 대하여 한 학교폭력 가해에 따른 『출석정지 5일 등』 처분을 취소한다.

[재결이유]

I.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초등학교 학생으로 같은 학교에 다니는 ●●●에 대한 학교폭력에 대하여 2016. 5. 13.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심의 결과 청구인과 청구인의 보호자에게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 17조에 의거 학교봉사 5시간, 학생특별교육 2시간, 보호자 동반 특별교육 2시간의 처분(이하 '1사건 처분'이라 한다)과 청구인은 ◇◇초등학교에 다니는 ▽▽▽에 대한 학교폭력에 대하여 2016. 6. 13.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심의 결과 청구인과 청구인의 보호자에게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 17조에 의거 피해학생 등에 대한 접촉, 헐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출석정지 5일, 학생 특별교육 5시간과 보호자 동반 특별교육 5시간의 처분을 하였다.
(이하 '2사건 처분'이라 한다)

나. 청구인은 1사건 처분에 대하여는 2016. 6. 5. 경, 2사건 처분에 대하여는 2016. 6. 22. 경 각 처분들이 있음을 알았는 바,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들에 이의가 있어 2016. 7. 29. 이 사건 처분들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다.

II.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들의 취소를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1사건 처분에 대하여는 사실관계가 다르고, ●●●도 청구인의 배를 찬 부분에 대하여는 제대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 ●●●의 입장에서만 조사되어 청구인이 불리한 조치를 받았던 만큼, 1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청구인은 2사건 처분에 대하여는 청구인의 부모가 최초 전화를 받았을 때의 상황과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진행과정에서 내용이 변경되었고, 폭행부위도 ▽▽▽의 입장에서만 조사되어 청구인이 불리한 조치를 받았던 만큼, 2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다. 청구인은 1사건과 2사건의 처분에 있어서 먼저 ●●●와 ▽▽▽이 유발한 점이 있고, 청구인에 대한 처분에 비하여 ●●●에 대한 조치가 너무 약하고, ▽▽▽은 처분을 받지 않았으며, 청구인은 여러차례 사과를 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들은 형평상 너무 과중하여 취소되거나 감경되어야 한다

III.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은 1사건 처분에 대하여 사건 발생 직후에 관련학생 상담과 목격 학생 상담을 통하여 보호자에게 연락을 하였고, 청구인의 진술서와 목격자들의 진술서, 진단서 등에 의하면 학교폭력이 인정되었으며, 청구인의 행위에 적합한 처분을 한 만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나. 피청구인은 2사건 처분에 대하여 사건 발생 직후에 보호자에게 연락을 하였고, 청구인이 1사건 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이 발생하여 반성의 정도가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청구인의 행위에 적합한 처분을 한 만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IV.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1. 관계법령

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7조,

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다.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제16조

2. 판 단

가. 인정되는 기초 사실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와 답변서, 증거자료,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 1) ○○○는 2016. 4. 28. 경 청구인에게 장난감칼로 뺨침을 하는 시늉을 해서 청구인은 ○○○에게 그만하라고 하였으나, ○○○는 계속 하였고, 이후 청구인은 ○○○를 폭행하였다

- 2) ▽▽▽은 2016. 6. 3. 과학수업을 마치고 교실로 올라가는 계단에서 팔꿈치로 ◇◇◇을 치려고 하다가 청구인의 팔을 치게 되었고, 청구인은 ▽▽▽의 어깨 아래쪽을 폭행하였다

나.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에 대한 판단

1)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르면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협박, 약취,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고, “따돌림”이란 학교내외에서 2명 이상의 학생들이 특정인이나 특정집단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신체적 또는 심리적 공격을 가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학교폭력이 발생한 사실을 신고받은 경우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위원장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에 의거 회의를 소집하고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위 법률에 근거한 처분의 위법, 부당여부에 대한 판단

가) 청구인은 1사건 처분에 대하여는 사실관계가 다르고, ●●●도 청구인의 배를 찬 부분에 대하여는 제대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 ●●●의 입장에서만 조사되어 청구인이 불리한 조치를 받았던 만큼, 1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과 ●●●간의 2016. 4. 28. 사건에서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가 청구인에게 고자를 만들어 버리겠다라는 부분, ●●●가 청구인을 발로 폭행하였다라는 부분은 목격자들의 진술이 엇갈리는 만큼, 진위여부를 명확히 알 수가 없고, 청구인의 주장을 전부 인정하더라도 청구인의 ●●●에 대한 행위는 분명히 학교폭력에 해당하며,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의 입장에서만 조사되어 청구인에게 불리한 조치를 한 것으로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만큼, 청구인의 주

장은 이유가 없다

나) 청구인은 2사건 처분에 대하여는 청구인의 부모가 최초 전화를 받았을 때의 상황과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진행과정에서 내용이 변경되었고, 폭행부위도 ▽▽▽의 입장에서만 조사되어 청구인이 불리한 조치를 받았던 만큼, 2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에 대한 폭행부위가 약간 달라진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의 ▽▽▽에 대한 폭행이 부정될 수 없고,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도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의 어깨아래쪽을 폭행한 것을 전제로 심의, 의결한 만큼, ▽▽▽의 입장에서만 조사되어 청구인에게 불리한 조치를 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만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다) 청구인은 1사건과 2사건의 처분에 있어서 먼저 ●●●와 ▽▽▽이 유발한 점이 있고, 청구인에 대한 처분에 비하여 ●●●에 대한 조치가 너무 약하고, ▽▽▽은 처분을 받지 않았으며, 청구인은 여러 차례 사과를 한 점에 비추어 이 사건 처분들은 형평상 너무 과중하여 취소되거나 감경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첫째, 1사건의 처분의 경중에 대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은 ●●●가 유발한 점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6학년이고, ●●●가 4학년으로서 하급생인 점, 청구인이 ●●●를 폭행하여 상처를 입힌 점 등을 고려하면 1사건 처분은 가혹하다고 할 수 없는 만큼, 위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한 위법, 부당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셋째, 2사건의 처분의 경중에 대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은 ▽▽▽이 유발한 점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1사건 처분을 받고도 반성하지 않고 얼마되지 않아 다시 이

사건을 일으킨 점, 청구인의 폭행부위, 태양 등을 고려하면 2사건 처분은 가혹하다고 할 수 없는 만큼, 위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한 위법, 부당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라) 따라서 청구인의 행위들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상의 폭행으로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처분들은 재량권을 일탈한 위법 부당한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V.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